



미국 법무부  
인권국



미국 교육부  
인권실  
고문 사무국

**모든 어린이들의 학교 입학 권리에 관한 정보:  
주정부, 학군, 부모들을 위한 질의 및 응답**

이 질의 및 응답은 주정부와 학군들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 입학<sup>1</sup> 방침과 관행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민족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실제 또는 인식에 근거한 체류신분으로 인해 학생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입학에 허용하지 않거나 단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법적 의무를 다 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미국의 주정부와 학군이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는 포괄적 환경을 창출하는 지원적 입학 방침과 관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sup>2</sup>

**문서**

**Q - 1. 학생이 실제로 학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학생이나 부모의<sup>3</sup>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를 물어봐도 되나요?**

**A - 1.** 안 됩니다.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는 학군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학생의 입학 의욕 상실 또는 학생이 입학에 단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up>1</sup> 이 지침 설명상 "입학"이라는 용어는 학교 등록, 취학, 출석을 의미합니다.

<sup>2</sup> 이 질의 및 응답 문서는 모든 어린이들의 입학 권리에 관해 미연방 교육부와 법무부가 2011년 5월 6일 발표한 "동료 여러분께" 서한에 수반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2011년에 이 "동료 여러분께" 서한이 발표된 이후 추가 질문들에게 답하기 위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sup>3</sup> 이 지침 설명상 "부모"라는 용어는 주정부나 현지 법에 의거하여 보호자 또는 기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 - 2. 연방정부 법 조항에 의한 홈리스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학군 내 학교에 등록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재 주소를 보여줘야 하나요?**

**A - 2.** 주정부나 학군은 진실된 거주 요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방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 42 U.S.C. §§ 11301 *et seq.*에서 정의한 홈리스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군 내 거주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 3. 학생들은 학군 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 3.** 학군 내 거주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문서를 제시하는지 규정은 주와 학군마다 다릅니다. 학군은 일반적으로 전화 청구서나 공과금 청구서, 주택용자나 임대 서류, 부모의 선서진술서, 임대 영수증, 월세를 지불하는데 사용한 머니 오더 사본, 또는 부모가 다니는 직장에서 회사 레터헤드에 인쇄한 거주 증명서 등과 같은 각종 문서를 거주 증명용으로 수락합니다.

부(모)는 주법과 현지법에서 제공하는 대체 방법을 이용하여 거주를 설립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주정부와 학군은 실제 또는 인식에 근거한 학생 부모의 인종, 피부색, 원국적, 시민권, 이민 상태 또는 그밖에 다른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차별된 규정을 적용하거나 같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합니다.<sup>4</sup>

학군은 거주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문서들의 목록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문서들이 불법체류 학생이나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학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거나 단념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 증명을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 중에 주정부가 발행한 학부모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있지만, 학군은 그러한 서류를 거주 증명으로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반드시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학생들의 입학에 불법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sup>4</sup> 법무부가 집행하는 1964년 미국 민권법 4장은 학군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집행하고 또한 연방정부 기금을 받는 기관이 의뢰하거나 기존 소송을 통하여 법무부가 집행하는 1964년 미국 민권법 6장은 인종, 피부색, 원국적에 근거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 4. 불법체류 홈리스 어린이를 포함한 홈리스 어린이도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군 내 거주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하나요?**

**A - 4.** 아닙니다. 비록 학군이 정당한 거주 증명 요구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연방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에 의하여 홈리스로 간주되는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요구조건 적용을 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비록 부모가 요구되는 거주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지라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맥키니-벤토법은 "홈리스 어린이들 및 청소년들"을 "주거지를 잃었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유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 거주하는, 다른 마땅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모텔이나 호텔, 트레일러 홈 또는 캠프장에서 사는, 비상 또는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는, 병원에 버려진, 또는 위탁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계절 농업 노동자들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ed.gov/programs/homeless/guidance.pdf](http://www.ed.gov/programs/homeless/guidance.pdf)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 - 5. 학생은 자신이 취학 적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 5.** 거주 증명 조건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주정부나 학군에서 요구하는 최소 또는 최대 적령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요구되는지 주와 학군마다 다르며, 이 목적을 위하여 관할 구역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주와 학군에 따라 대체 서류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을 제시하는 종교기관이나 병원 또는 의사가 발행한 확인서, 가족용 성서에 기입된 날짜, 입양 기록, 부모의 선서진술서, 출생증명서, 이전에 확인된 학교 기록, 법이 허용하는 그밖에 다른 서류. 학군은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대신 제출할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같은 서류들의 제출 요구로 불법체류 학생이나 불법체류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이 정의하는 (위 Q-4 참조) 홈리스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교 입학과 취학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거나 단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학군은 학생이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외국 출생 증명서와 같은 외국에서 출생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의 입학을 차단하거나 단념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류 요구는 또한 인종, 피부색, 원국적에 근거하여 차별하거나 차별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학교 입학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합니다.

학군은 학부모가 제공한 학생의 출생 증명서나 그밖에 다른 서류를 학생 또는 부모나 그밖에 다른 가족들의 이민 상태를 알아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요청들은 이민 상태에 근거하여 학생이 입학을 단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 6. 자녀의 외국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녀나 부모의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러한 서류 제출을 주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6.** 학군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시키고 자녀들의 입학 환영함을 재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법은 학군이 학생의 연령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군은 학생의 연령 증명 서류로 외국 출생 증명서, 세례 증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들을 미국 내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세례 증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들과 똑같이 취급할 것임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전에 강조했듯이, 학군은 연령 증명 서류와 거주 증명 서류에 적용하는 이러한 규정과 기준을 인종, 피부색, 원국적,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어린이로서 출생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거나 제출하기 원치 않으면,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미국 시민 어린이와 동일한 입학 선택을 주어야 하며 똑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Q - 7. "동료 여러분께" 서한에 비추어, 학군은 학생에게 사회보장 번호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나요?**

**A - 7.**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학군이 등록하려는 학생들이나 재학중인 학생들로부터 사회보장 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학군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합당한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수집하기로 했으면 사회보장 번호의 기밀을 유지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밖에, 정보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되는 연방법에 의하여, 교육구가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할 때는 제시 여부는 자발적임을 고지해야 하며 왜 그러한 번호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법적 또는 다른 근거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1974년 개인정보 보호법, Pub. L. No. 93-579, § 7, 5 U.S.C. § 552a (note)를 [http://www.ssa.gov/OP\\_Home/comp2/F093-579.html](http://www.ssa.gov/OP_Home/comp2/F093-579.html)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께" 서한에서 명백히 말했듯이, 학군은 학생이 자신의 (또는 부모의) 사회보장 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sup>5</sup> 학군은 사회보장 번호가 아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고유 식별번호가 필요하면 각 학생에게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

<sup>5</sup> 마찬가지로, 학군은 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사회보장 번호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나 학군은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인종, 피부색, 원국적,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로 인한 학생의 입학 의욕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군이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기로 선택했다면, 각종 서식을 포함한 모든 입학 및 등록 서류, 웹사이트,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서신에서 학생의 사회보장 번호 제공은 자발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사회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의 입학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Q - 8. 학군은 (a) 반드시 수집해야 할 정보와 (b) 수집하면 학생의 입학 의욕 또는 취학 의욕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 8.** 주법에 의하여 학생이 등록할 때 학군이 수집해야 할 정보는 실제로 몇 가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연령 증명서, 예방주사 기록, 학군 거주 증명서입니다. 주정부와 학군은 둘 다 미국헌법과 유효한 연방 또는 주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즉, 인종, 피부색, 원국적에 근거하여 차별하거나 차별 효과를 가져오는 방침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법적 책임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와 학군은 또한 현재 방침들을 검토하여 이민서류나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거나 또는 학부모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불법체류 어린이들의 입학 의욕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행이나 방침이 발견되는 경우 학생 입학을 단념시키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Q - 9. 학생의 입학 의욕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군은 학생이 오면 누구든지 입학시키고 서류는 입학 후 나중에 요청해야 하나요?**

**A - 9.**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학군은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에서 홈리스로 분류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군 내 거주 증명서와 연령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나 연방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은 (예를 들어 학생 인구통계 자료) 학생의 등록이 끝난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정보 수집을 미룸으로써 학군은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 요구는 또한 인종, 피부색, 원국적,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에 근거하여 차별하거나 차별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Q - 10. 학생의 개인 정보를 받아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시킨 후 학생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경우가 있나요?**

**A - 10.** 학군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1974 년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은 교육부에서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군들이 학부모나 학생의 (학생이 18 세 이상이거나 대학을 다니는 경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생활기록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와 함께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다른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 U.S.C. §1232g 참조.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개인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취득해야 하는 FERPA 법에 제한적인 예외가 있고 (34 C.F.R. § 99.31 참조) 또한 학군이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 단체에 한 학생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연방 이민법에 열거된 한정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 하나가 학생이 비이민 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그리고 학생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어떤 특정 학교에 다녀야만 되는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학군은 학생이 그러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에 이미 제출했을 기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은 이민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애초부터 요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Q - 11. 학군은 입학 요구사항에 관하여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부모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나요?**

**A - 11.**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의 부모가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군은 입학에 관하여 중요 정보를 반드시 의미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학부모가 질문할 때 응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 제공은 1964 년 미국 민권법 6 장, 42 U.S.C. § 2000d 와 동등교육기회법, 20 U.S.C. § 1703 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에는 주정부가 승인하는 거주 증명과 연령 증명을 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대체 문서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군에서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학생이 자신의 (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사회보장 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학생의 입학에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중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와 학군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가 지원 활동**

**Q - 12. 학교는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점을 부모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 12.** "동료 여러분께" 서한에서는 입학 방침과 관행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입학시키려는 부모들의 의욕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주정부와 학군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군들이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지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학군은 학군 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군 내 학교에 다닐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13. 학군 이 분야의 법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직원 교육을 해야 하나요?**

**A - 13.** 학교와 학군 차원의 교직원 교육을 권장합니다. 주정부와 학군은 연방정부 법을 준수해야 할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직원 교육은 그러한 준수에 도움이 됩니다.

**Q - 14.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적절하게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정부 교육기관들(SEA)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A - 14.** 2011년 5월 6일에 발부된 "동료 여러분께" 서한은 2014년 5월 8일 수정 및 재발부되어 학군과 주정부가 기존 법에서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SEA는 연방 차별금지 법 준수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 입학에 관한 법들은 연령과 거주 증명 요건을 포함하여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SEA의 선도적 참여가 요구되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SEA는 기존 관행과 방침들을 검토하여 학군들이 헌법과 연방 차별 금지법들을 위반하지 않고 학교 입학에 관한 주정부 요구조건들을 준수하는 관행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SEA는 소속 학군들의 입학 관행을 검토하여 불법체류 학생들이나 불법체류 부모들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불법적으로 단념시키거나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